해양금융 중심의 VCC 제도 도입

2026. 9.

본 보고서는 학술적 연구 및 공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상업적 용도로의 활용은 제한됩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특정 기업 활동, 금융 투자 또는 법률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해양금융 중심의 VCC 제도 도입

(‘26. 9. 28., 글로벌금융중심지팀 박유정)

1. 서 론

□ 현행 「선박투자회사법」상 1사 1선박 중심의 투자구조는 다수 해양자산의 통합·분산 운용과 투자구조의 유연한 설계에 한계가 존재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VCC형태의 투자플랫폼 도입 검토 필요

□ 현행 선박투자회사를 개별 선박 중심의 특수목적 투자기구에서 복수 해양자산을 지속적으로 발굴·조성·운용하는 해양금융 투자플랫폼으로 고도화

□ VCC 제도의 Umbrella 및 Sub-fund 구조를 도입하여 하나의 운용체계 아래 복수의 선박·해양 프로젝트를 구성·관리할 수 있는 구조로 제도 개선 검토

ㅇ 선박별·프로젝트별 독립적인 투자계정 운영을 통해 위험을 구분하고, 운용·관리 기능은 통합하여 투자 효율성 제고

ㅇ 선박뿐만 아니라 선박의 건조·개조·운항 및 이에 직접 연계된 조선·항만·해운 프로젝트와 관련 금융자산까지 투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참고 현행 「선박투자회사법」 한계

□ 현행 「선박투자회사법」은 해양 자산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투자플랫폼보다는 특정 선박 취득을 위해 투자자 자금을 모으는 프로젝트 회사로 설계

ㅇ 1선박 중심의 경직된 투자 구조

- 현 「선박투자회사법」에서는 원칙적으로 1척의 선박을 소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회사 설립의 경우에도 자회사별 1척만 소유하도록 규정

- 존립기간 중 보유선박을 다른 선박으로 교체하는 것도 금지되며 복수 선박을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운용하거나 시장 상황에 따라 자산을 교체하는 것도 어려움

ㅇ 투자 대상이 선박에 한정

- 업무가 선박의 취득·대선·관리·매각, 자금차입·사채 및 주식 발행 등으로 제한되고 이외 업무의 겸업도 금지

- 유가증권 투자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조선소·조선기자재·항만·해양에너지 기업 등에 대한 지분투자나 포트폴리오 투자가 곤란

ㅇ 선박을 보유·용선 하는 SPC 성격이 강함

- 선박 취득후 선박운항회사에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대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결과적으로 적극적 자산운용기구 보다는 특정 선박을 취득하고 용선수익을 배분하는 선박 단위의 특수목적 투자기구에 가까움

ㅇ 자산교체 및 자본 재활용이 어려움

- 선박 교체 금지 때문에 선박 매각 후 새로운 선박에 재투자하는 evergreen*·reinvestment형 구조가 어렵고 특정 프로젝트 종료 후 동일 투자회사를 새로운 프로젝트에 재활용하기보다 개별 투자회사를 새로 만드는 구조에 가까움

* evergreen : 선박투자회사의 존립기간(만기)을 정하지 않고 영구적·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형태

ㅇ 실체 있는 통합 운용플랫폼으로의 기능 어려움

- 현행 법에서는 본점 외 영업소 설치 상근임원 및 직원 고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실제 자산운용은 등록된 선박운용회사 등에 위탁하는 구조

- 따라서 선박투자회사 자체가 전문인력을 보유하면서 여러 해양금융 사업을 직접 발굴·운용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

ㅇ 자금조달 용도 제한적

- 차입 사채발행은 주로 선박 취득·개조 및 기존 차입금·사채 상환 목적으로 제한

- 시행령상 차입·사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의 10배이며 따라서 일반적인 투자회사처럼 자금을 조달해 다양한 해양산업 자산에 탄력적으로 배분하는 구조는 아님

ㅇ 투자자 위험분산 기능이 제한적

- 1선박 중심 구조에서는 투자자가 특정 선박, 특정 용선사, 특정 선종 및 해당 선박의 잔존가치 위험에 집중 노출

- 여러 선박·선종·지역·용선사를 한 펀드에 편입해 위험을 분산하는 portfolio effect를 얻기 어려워 1선박 구조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한계 존재

□ 현행 「선박투자회사법」은 개별 선박의 취득·보유 및 자금조달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복수 선박 및 다양한 해양금융 프로젝트의 통합적 운용에 한계

2. VCC 개요

□ Variable Capital Company(VCC)

○ 투자 펀드를 운용하기 위해 설계된 회사형 투자집합기구 제도

- 여러 투자펀드를 하나의 회사 안에 담아 운용할 수 있게 만든 펀드 전용 회사
- 각 서브펀드는 투자 대상과 투자자가 서로 다를 수 있고 투자금·자산·수익·손실·빚은 따로 관리되지만 회사의 관리조직과 운영 인프라는 공유

□ VCC 구조

○ VCC는 단일 펀드와 엄브렐러 구조 두가지이며 일반적으로 엄브렐러 구조를 취함

- 단일펀드 구조의 경우 펀드운용 라이선스를 보유한 펀드운용사가 관리 하며 모집된 투자자들의 자금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투자
- 단일 펀드 구조에서는 두가지 종류의 주식 발행이 가능
  - 펀드운용사가 보유하며 의결권이 있는 운용사 주식
  - 통상적으로 의결권 없이 경제적 권리만을 가지는 투자자 주식
- 엄브렐러 구조의 경우 하나의 VCC 우산 아래 여러개의 하위펀드(sub-fund)를 설정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주주/투자자 그룹이 각각의 하위펀드에 투자

단일 펀드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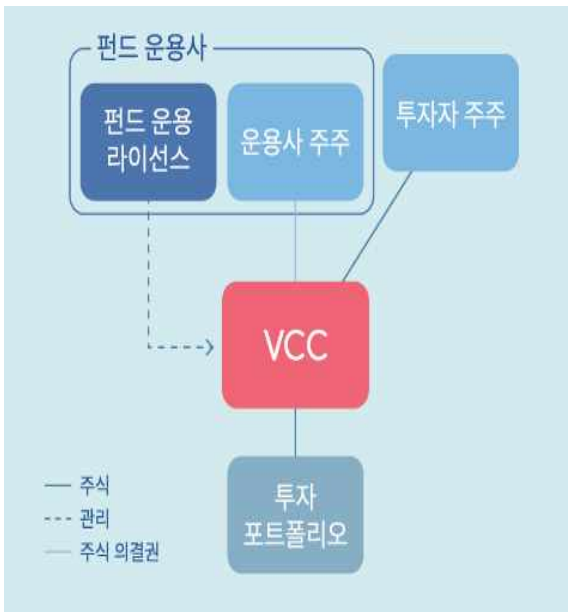

엄브렐라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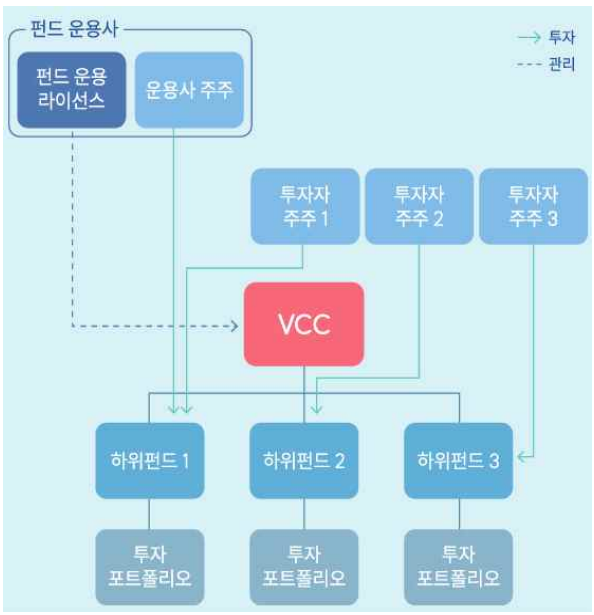

출처 : 법무법인 미션 정성희, 다니엘 정, 싱가포르 VCC제도의 이해와 활용방안, thefrontier, 2025.2

○ VCC의 핵심요소

핵심요소	내용	의미
① **가변자본 (Variable Capital)**	투자자의 가입·환매에 따라 자본금이 자유롭게 증감	펀드의 자금 유출입을 자본금 변경 절차 없이 처리
② **단일 법인 + 복수 Sub-Fund**	하나의 VCC 안에 여러 개의 독립적인 Sub-Fund 설정	여러 펀드를 하나의 법인 플랫폼에서 운용
③ **자산·부채의 법적 분리**	각 Sub-Fund의 자산·부채를 다른 Sub-Fund와 분리	한 펀드의 손실·채무가 다른 펀드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
④ **펀드 전용 회사형 구조**	VCC 자체가 투자펀드의 법적 주체가 됨	투자자 → 펀드 → 운용사라는 구조를 회사법적으로 구현
⑤ **국제적 운용·세제·계약 환경**	국제 투자자가 익숙한 회사형 펀드, 영문 계약, 싱가포르의 펀드 세제·규제 체계	글로벌 투자자와 운용사의 유치에 유리

□ VCC는 펀드마다 회사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여러 장점이 존재

○ (비용절감 및 위험관리) 펀드 운용사측면에서 회사 하나의 이사회・회계・법무・관리 체계를 여러 펀드가 공동 사용하여 설립비와 관리비 절약할 수 있으며 펀드간 자산・부채 분리를 통해 위험을 통제 가능

○ (유연한 투자전략)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하나의 VCC내 다양한 Sub-Fund를 구성할 수 있어 기존 단일펀드 중심 구조보다 다양한 투자상품을 신속히 설계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자금을 배분할 수 있는 구조적 유연성 확대

- 복수의 Sub-Fund를 통해 투자대상이나 사업별로 자금조달 구조와 투자구조를 다르게 설계 가능
- 기존 선박 중심의 단일 투자대상에서 벗어나 해양・물류 관련 다양한 자산과 투자 전략을 각각 펀드 형태로 구성하여 자산・전략 펀드화
- 해양산업에서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금융시장 투자자금과 연결하여 산업과 자본 시장의 연결 강화

○ (VCC중심 금융 생태계 조성) 금융중심지 측면에서는 VCC를 통해 부산에 국제 자금을 유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기관과 금융서비스의 집적을 촉진 가능

- 부산이 강점을 가진 해양・물류・항만・선박금융 등 지역 산업기반과 연계한 금융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중심으로 투자자・금융회사・운용사・전문서비스기관이 집적되는 금융생태계 조성

□ 정부의 지원보다 민간 자금을 모아 필요한 산업에 공급하는 비용과 절차를 줄일 수 있어 민간투자가 움직일 수 있는 금융인프라 역할 가능

3. 싱가포르 VCC 도입 및 운영 사례

□ VCC 제도 도입을 위한 별도 특별법 시행

○ 싱가포르는 기존 「Companies Act」에서 VCC를 구현한 것이 아니라, 2018년 「Variable Capital Companies Act 2018」을 별도로 제정하고 2020년 1월 VCC 제도를 공식 시행

- 「Variable Capital Companies Act 2018」에서 VCC의 설립·운영·하위펀드(sub-fund)·주식 환매·자본변동·청산 등을 독립적으로 규율
- 별도법으로 인해 일반 회사에는 곤란한 VCC 특유의 구조를 허용

○ 「Variable Capital Companies Act 2018」에서는 VCC 특유의 사항은 VCC Act에서 직접 규정하고, 기존 Companies Act 중 필요한 것은 준용하였으며 다른 법률과 충돌하는 부분은 VCC Act가 특례를 두며, 도산법 IRDA*는 VCC에 맞게 수정해서 적용

* IRDA(Insolvency, Restructuring and Dissolution Act 2018) : 싱가포르의 도산·회생 관련 기본법

쟁점	기존 법체계상 문제	싱가포르의 처리 방식	구체적 의미
VCC라는 법인 형태	기존 Companies Act상 일반 회사만으로는 투자펀드에 특화된 가변자본회사 구조를 구현하기 어려움	VCC Act를 별도 제정하여 VCC라는 새로운 법인형태 창설	VCC를 일반 영업회사가 아니라 투자펀드 전용 corporate structure로 별도 인정함. VCC 제도는 2020년 1월 14일부터 시행됨
가변자본 (variable capital)	일반 회사는 자본금 유지·감자·자기주식 취득 등에 회사법상 절차와 제한이 존재함	VCC Act가 VCC의 주식·자본구조에 별도 특례 설정	투자자의 가입·환매에 따라 펀드 규모가 변하는 투자펀드 특성을 회사 형태에서도 수용할 수 있도록 함
주식 환매·상환	일반 회사가 자기 주식을 자유롭게 환매하는 것은 회사법상 제한을 받음	VCC Act 제35조에서 VCC가 자기주식을 repurchase 또는 redeem 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	투자자가 펀드에서 나갈 때 일반 회사의 복잡한 감자절차 대신 펀드의 환매 메커니즘을 사용할 수 있게 됨. VCC 정관에도 주주의 환매·재매입 권리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Umbrella VCC	하나의 회사 안에 여러 독립 펀드를 두는 구조는 일반 회사법의 기본적인 조직구조와 다름	VCC Act Part 4에서 umbrella VCC와 sub-fund 제도를 명시적으로 신설	하나의 VCC 법인 아래 여러 sub-fund를 둘 수 있음. 각 sub-fund는 ACRA에 별도로 등록되지만, 각각 독립된 회사가 되는 것은 아님.
Sub-fund별 자산·부채 분리	법인이 하나라면 원칙적으로 그 법인의 재산 전체가 채권자의 책임재산이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VCC Act 제29조에서 statutory segregation을 직접 규정	A sub-fund의 자산은 B sub-fund나 VCC 자체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수 없고, A sub-fund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A sub-fund 자산만으로 변제하도록 함. 단순한 내부회계 분리가 아니라 법률상 책임재산 분리임.

쟁점	기존 법체계상 문제	싱가포르의 처리 방식	구체적 의미
Sub-fund별 회계	하나의 법인이므로 일반 회사라면 통합 재무 구조로 볼 여지가 큼ㄹ	각 sub-fund의 자산·부채 및 회계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규정	현재 ACRA도 umbrella VCC의 각 sub-fund가 별도의 annual return을 제출하고, 각자의 계정·자산·부채를 다른 sub-fund와 구분해 표시하도록 요구
일반 회사법 적용	VCC라고 해서 이사, 주주, 주식, 담보권 등 회사법의 모든 제도를 새로 만들 필요는 없음	Companies Act의 필요한 규정은 VCC Act에서 선택적으로 적용·준용	예컨대 주식, 사채, 담보권, 이사 의무 등 기존 회사법의 틀을 상당 부분 활용하면서 VCC 특성상 맞지 않는 부분만 별도로 수정함. VCC Act 자체가 Companies Act 적용관계를 별도로 두고 있음.
VCC 자체의 도산·청산	VCC도 법인이므로 지급불능이 되거나 해산할 경우 일반적인 도산절차가 필요함	일반 도산법 체계를 기본으로 하되 VCC에 맞는 별도 규칙을 결합	싱가포르가 VCC를 도산법 밖에 둔 것이 아니라 기존 insolvency framework 안에서 VCC를 처리하도록 설계함. 현재 VCC의 winding-up 및 receivership에 관한 별도 하위규정도 운용되고 있음
Sub-fund의 도산·청산	Sub-fund는 독립 법인이 아닌데 특정 sub-fund만 부실해질 수 있음	VCC Act에서 sub-fund 자체의 winding-up 절차를 별도로 인정	하나의 umbrella VCC 전체를 청산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한 특정 sub-fund만 청산할 수 있게 함. VCC Act Part 4에 'Winding up of sub-fund'가 별도 규정되어 있음.
다른 Sub-fund에 대한 채권자의 접근	A sub-fund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같은 법인인 B sub-fund 재산까지 집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됨	법률로 다른 sub-fund의 자산에 대한 접근을 차단	예를 들어 Fund A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Fund B의 자산으로 A의 채무를 갚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이것이 umbrella VCC의 핵심 법적 장치
기존 법과 충돌하는 경우	특별법과 기존 회사법·도산법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충돌 가능	VCC Act에서 적용·배제·수정 관계를 직접 규정	즉 기존 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VCC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은 특례를 만들고, 나머지는 기존법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임.

□ 싱가포르의 VCC 제도 운영

○ 싱가포르 VCC는 2018년에 제정된 VCC법(Variable Capital Companise Act 2018)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회사로 설립을 위해서는 싱가포르 기업청(ACRA*)에 등록해야 하며, 운영 과정에서 증권선물법(Securities and Futures Act)의 요건을 준수하여햐 함

* ACRA(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 싱가포르 회계・기업규제청

○ 운영 측면에서는 VCC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 최소 1명 이상의 이사가 필요하며(일반 투자자 대상 펀드일 경우 3명) 이 이사는 펀드 운용사의 이사를 겸임할 수 있음

- Corporate secretary, 감사, 등록 사무소는 통상 싱가포르에 위치
- 싱가포르에서 인가를 받은 펀드 운용사가 운용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규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KYC(Know Your Customer)를 실시해야 하나, 이를 펀드 운용사나 규제 대상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주주명부가 비공개되어 기밀성이 보장
- 모든 투자자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하는 한 연례 주주총회는 생략할 수 있음

○ VCC 설립절차

- (1단계) 펀드 구조 설계 : 단독형 또는 엄브렐러형, 회계연도 종료일과 투자전략, 투자자 유형 등 결정
- (2단계) 싱가포르금융관리국(MAS) 적격 펀드운용사 선정 : 적격 펀드운용사를 지정해야하며 일반 투자자나 일번 법인이 VCC를 설립해 직접 자산을 운용하는 구조는 불허용

〈적격 펀드운용사 요건〉
- 펀드운용업 자금관리서비스(CMS) 라이선스 보유자
- 증권선물법상 라이선스 면제 금융기관

- (3단계) 이사 등 필수 구성원 확보

〈이사 및 필수구성원 요건〉
- 최소 1명의 이사
- 최소 1명의 싱가포르 상주 이사
- 이사 중 최소 1명은 펀드운용사의 이사 또는 적격 대표자
- 법무비서: 설립 후 6개월 이내 선임(Coporate Service가 필수 구성요소)
- 감사인: 설립 후 3개월 이내 선임
- 싱가포르 내 등록사무소

- (4단계) 싱가포르회계·기업규제청(ACRA)에 VCC 명칭 예약 및 설립 등록 : VCC 정관, 등록사무소, 적격 펀드운용사 정보 및 동의·자격 확인서 등을 VCC Potal에 제출
  - 승인이 완료되면 싱가포르고유법인등록번호(UEN) 발급
- (5단계) 서브펀드 등록 : 우산형 VCC는 개별 서브펀드가 형성된 날부터 7일 이내에 ACRA VCC Portal에 등록
- (6단계) 투자자 유형에 따른 MAS 판매 신고·인가

○ VCC 세제 혜택 제도

- 싱가포르는 VCC는 MAS의 승인을 받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펀드 세제 지원 제도를 적용 받을 수 있음

- 싱가포르 VCC 세제구조는 VCC 설립만으로 세제 혜택을 받기보다는 펀드 세제특례 제도인 Section 13O·13U을 충족할 경우 펀드 단계 투자소득을 면세하는 것이 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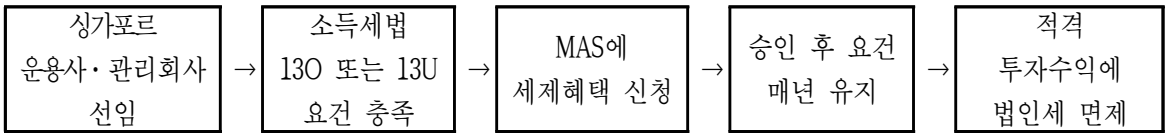

- Section 13O 및 Section 13U 세제혜택 요건

구 분	Section 13O	Section 13U
제도의 성격	싱가포르에 설립된 펀드를 위한 세금면제 제도	대규모 펀드와 다양한 형태의 펀드를 위한 세금면제 제도
주요 대상	싱가포르에서 설립·운영되는 중소·중견 규모 VCC	대규모 VCC, 사모펀드, 인프라펀드 등
VCC 설립지	반드시 싱가포르에 설립된 회사여야 함	싱가포르 VCC도 신청 가능하며, 적용 가능한 펀드 형태가 13O보다 넓음
세법상 거주지	싱가포르 세법상 거주자여야 함	싱가포르 VCC가 신청하는 경우 싱가포르에서 실질적으로 관리 필요
최소 운용 자산	회계연도 말 기준 지정투자자산 S$500만 이상	신청 시점과 매 회계연도 말 기준 지정 투자자산 S$5,000만 이상
자산운용사	MAS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가 면제된 싱가포르 자산운용사가 운용	MAS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가 면제된 싱가포르 자산운용사가 운용
투자전문인력	운용사에 투자전문인력 2명 이상	운용사에 투자전문인력 3명 이상
펀드관리 회사	싱가포르 소재 펀드관리회사 이용 필요	싱가포르 거주 VCC인 경우 싱가포르 소재 펀드관리회사 이용 필요
싱가포르 현지 지출	운용자산에 따라 연간 S$20만·S$30만·S$50만 이상	운용자산에 따라 연간 S$20만·S$30만·S$50만 이상
신청기관	MAS에 신청하여 승인 필요	
주요 세제 혜택	지정투자자산에서 발생한 적격 투자소득에 대해 싱가포르 법인세 면제	
혜택 대상 소득	주식·채권·펀드지분·대출·파생상품·외국 부동산 등 지정투자자산에서 발생한 적격 소득과 이익	13O와 동일하게 지정투자자산에서 발생한 적격 소득과 이익
투자자 배당	싱가포르 세법상 거주 VCC가 지급하는 배당은 투자자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싱가포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배당 원천징수세도 없음	
GST(Goods and Services Tax) 혜택	요건을 충족하는 펀드는 운용·법률·회계 등 비용에 부담한 GST를 정해진 비율로 회수 가능	
적합한 경우	비교적 작은 규모로 싱가포르에서 VCC를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최소 S$5,000만 이상의 대형·기관투자자 중심 펀드를 운영하려는 경우

4. 해양금융 VCC 적용 도입

□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을 통한 Umbrella형 투자플랫폼 구축

○ 현행 「선박투자회사법」은 복수 자산을 지속적으로 운용하는 플랫폼보다는 개별 선박 단위의 특수목적 투자기구 성격이 강함

○ 싱가포르 VCC는 하나의 법인에 복수 Sub-fund를 둘 수 있고, 각 Sub-fund의 자산·부채를 법적으로 분리하는 투자펀드 전용 회사제도로 Sub-fund별로 서로 다른 투자전략과 포트폴리오 운용이 가능

○ 따라서 싱가포르 VCC 제도를 활용하여 해양금융에 필요한 기능을 선별해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검토

○ 단, 한국의 경우 VCC 제도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회사법, 자본시장법, 도산법 등 기존법률의 상당한 제도 특례가 필요

- 특례와 준용관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국회 입법 필요

□ 투자 대상

○ 현행 「선박투자회사법」은 선박 취득·대선·관리·매각 등을 핵심 업무로 하고 유가증권 투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투자대상이 매우 협소

○ 반면 Umbrella형 플랫폼을 만들려는 목적은 복수 프로젝트를 하나의 운용체계 아래 묶고, Sub-fund별로 전략과 위험을 분리하는 데 있으므로 투자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으며, 싱가포르 VCC도 특정 자산군에 한정된 제도가 아니라 투자펀드용 구조 자체를 제공

○ 선박 자체에 한정할 경우 기존 선박투자회사와 차별성이 약해지므로 선박을 핵심 자산으로 하되, 선박의 건조·취득·운항·개조·매각 및 이에 직접 연계된 조선·항만·해운 프로젝트와 관련 금융자산까지 투자대상 확대

- 권고 투자대상
  - 선박 : 상선, LNG선, 컨테이너선, 벌크선, 탱커, 친환경·대체연료 선박
  - 조선 : 신조 프로젝트, 개조·Retrofit, 조선소 관련 프로젝트
  - 조선기자재 : 친환경 기자재, 추진·연료시스템, 디지털 선박장비 등
  - 항만·물류 : 터미널, 물류시설, 항만운영 관련 자산
  - 해양에너지 : 해상풍력 지원선박, 해양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 해운·해양기업 : 해운사·조선사·기자재기업 등에 대한 지분·메자닌·대출형 투자
  - 해양금융자산 : 선박리스채권, 대출채권, 프로젝트채권 등

□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 : 1선박 SPC법에서 다수 해양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Umbrella형 투자회사법으로 변경하는 방향

※ 완성도 있는 VCC 도입을 위해서는 회사법, 세법 특례 등이 필요하나 우선적으로 「선박투자회사법」 자체에서 개정할 수 있는 요소를 검토하고자 함

□ 향후 개정 방향

○ 현행 개별 선박 중심의 선박투자회사 제도에서 복수 선박 및 해양금융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운용할 수 있는 Umbrella형 투자플랫폼으로 확대

- 선박투자회사의 1선박 원칙 및 선박교체 제한 완화
- 하나의 선박투자회사 아래 복수의 구분계정 및 프로젝트별 자회사 설치 허용
- **투자대상을 선박에서 선박금융 및 선박과 직접 연계된 해양산업 프로젝트로 확대**
- 프로젝트별 자산·부채·손익을 구분 관리하고 별도의 투자·배당구조를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초기에는 프로젝트별 자회사를 통한 법인격 분리를 활용하고, 하위계정 자체에 대한 법정 책임재산 분리 및 독립도산제도는 장기 검토과제로 설정

참고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 예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1조(목적)이 법은 선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에 대한 건전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해운산업의 활성화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이 법은 선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 및 선박과 연계된 해양산업 관련 자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민간자본의 해양산업 투자를 촉진하여 해운·조선 등 해양산업 및 해양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박 중심의 투자제도를 선박과 직접 연계된 해양산업 및 해양금융 분야로 확대하고, 해양금융 투자플랫폼으로서의 제도 목적을 명확화
제2조(정의)1. "선박투자회사"란 자산을 선박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제2조(정의)**1. "선박투자회사"란 자산을 **선박 또는 해양금융자산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이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투자대상을 단일 선박에서 해양금융자산으로 확대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신설>	**5. “해양금융자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또는 권리를 말한다.**가. 선박 및 선박의 소유·운항·대선·리스에 관한 권리 나. 선박의 건조·개조·친환경 전환과 직접 관련된 사업에 대한 투자자산 다. 선박의 취득·건조·운항 또는 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특수목적회사의 주식·지분·채권 라. 그 밖에 해운·조선·항만 등 해양산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선박 자체뿐만 아니라 선박금융 및 프로젝트금융 자산을 투자대상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적격투자자산의 범위를 규정
<신설>	**6. “구분계정”이란 선박투자회사가 특정 선박 또는 해양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를 위하여 다른 투자사업과 구분하여 자산·부채 및 손익을 관리하는 단위를 말한다.**	VCC의 Sub-fund 기능을 참고하여 하나의 선박투자회사에서 복수 프로젝트를 구분 운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신설>	**7. “프로젝트자회사”란 선박투자회사가 특정 선박 또는 해양금융자산의 취득·보유·운용을 목적으로 국내 또는 국외에 설립하거나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프로젝트별 법인격을 활용하여 자산·부채 및 사업위험을 구분하고 Umbrella형 투자구조를 구현
제3조(선박투자회사)① 선박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	**제3조(선박투자회사)**① (현행과 같음)	-
② 선박투자회사는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 또는 국외에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본다.	② 선박투자회사는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 또는 국외에 **프로젝트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이에 출자할 수 있다.**이 경우 프로젝트자회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본다.	기존 자회사 제도를 특정 선박 또는 해양금융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프로젝트자회사 구조로 확대
③ 선박투자회사는 **1척의 선박을 소유하여야 한다.**다만,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자회사는 각각 1척의 선박을 소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투자회사는 별도로 선박을 소유할 수 없다.	③ 선박투자회사는 **둘 이상의 선박 또는 해양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직접 또는 프로젝트자회사를 통하여 이를 취득·보유 또는 운용할 수 있다.	현행 1회사·1선박 원칙을 폐지하여 복수 선박 및 복수 프로젝트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투자 허용
④ 선박투자회사 및 자회사는 그 존립기간 중에 소유하고 있는 선박을 다른 선박으로 대체할 수 없다.	④ 선박투자회사 및 프로젝트자회사는 투자목적 달성, 자산가치 제고 또는 위험관리 등을 위하여 보유 선박 또는 해양금융자산을 처분하고 **다른 선박 또는 해양금융자산으로 대체하거나 재투자할 수 있다.**	선박교체 금지를 폐지하여 시장상황에 따른 자산교체 및 재투자를 허용하고 계속형 투자구조 구축
<신설>	**⑤ 선박투자회사는 투자목적·투자대상 또는 투자자별로 둘 이상의 구분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하나의 선박투자회사 아래 복수 투자전략 및 프로젝트를 운용할 수 있는 Umbrella 구조 도입
<신설>	**⑥ 구분계정의 설정·변경·폐지 및 프로젝트자회사의 설립·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체적 운용방식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제도 유연성 확보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8조(정관)①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 8. 자산운용의 기본방향 9. 수입 분배 및 자본 증감 등에 관한 사항 등	**제8조(정관)**① 현행 각 호 외에 다음 각 호를 추가함. **○. 구분계정의 설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각 구분계정의 투자목적 및 투자대상 ○. 구분계정별 자산·부채 및 손익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구분계정별 수익분배에 관한 사항 ○. 프로젝트자회사의 설립·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 투자자산의 처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구분계정형 투자회사 운영에 필요한 핵심사항을 정관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여 투자자 보호 및 운용 투명성 확보
제24조(업무의 범위)①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선박의 취득 2. 선박의 대선 3.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4. 주식의 발행 5. 취득한 선박의 관리·매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24조(업무의 범위)**①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선박의 취득·건조·개조·관리·대선·리스 및 매각 2. 선박의 친환경 전환 및 성능개선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 3. 프로젝트자회사의 설립 및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4. 선박의 취득·건조·개조·운항·대선 또는 리스와 관련된 채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의 취득 5. 선박과 직접 연계된 조선·항만·해운 프로젝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6.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7. 주식의 발행 8. 보유자산의 관리·매각 및 그 매각대금의 재투자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선박 보유·대선 중심의 업무 범위를 선박금융 및 직접 연계된 해양산업 프로젝트 투자까지 확대
② 선박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현행과 같음)	무분별한 일반 기업투자 등으로의 확대 방지
③ 선박투자회사는 자산을 유가증권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설립되는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선박투자회사는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투자 목적 외에는**자산을 유가증권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프로젝트자회사 지분, 선박금융채권 등 해양금융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유가증권 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
제25조(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①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만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선박의 취득 또는 개조 2. 기존 차입금 또는 사채의 상환	**제25조(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①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선박의 취득·건조 또는 개조 2. 제24조제1항에 따른 해양금융자산의 취득 또는 투자 3. 프로젝트자회사의 설립 또는 출자 4. 기존 차입금 또는 사채의 상환 5. 투자자산의 재금융 6. 그 밖에 투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투자대상 확대에 맞추어 자금조달 목적도 선박 취득에서 프로젝트 투자·출자·재금융 등으로 확대
② 제1항에 따른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의 한도는 자본금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차입한도 규제는 우선 현행 유지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신설>	**제25조의2(구분계정의 설정 및 관리)**① 선박투자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목적·투자대상 또는 투자자별로 둘 이상의 구분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선박투자회사는 각 구분계정별로 투자자산·부채·수입·비용·손익 및 수익분배를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특정 구분계정에 귀속되는 자금은 다른 구분계정의 투자 또는 채무변제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분계정 간 자금대여·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⑤ 구분계정의 회계·평가·공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mbrella 구조의 실질적 작동을 위해 프로젝트별 자금과 손익의 혼용을 방지하고 구분회계 원칙 마련
<신설>	**제25조의3(프로젝트자회사)**① 선박투자회사는 특정 선박 또는 해양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프로젝트자회사를 설립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② 프로젝트자회사는 정관 또는 투자계획에서 정한 특정 투자사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선박투자회사는 각 프로젝트자회사를 특정 구분계정에 귀속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프로젝트자회사의 자금차입·담보설정·채무보증 및 자산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완전한 VCC식 법정 책임재산 분리를 도입하지 않고도 프로젝트별 법인격을 활용하여 위험격리 효과 확보
<신설>	**제25조의4(투자자산의 처분 및 재투자)**① 선박투자회사는 투자목적 달성, 자산가치 제고 또는 위험관리 등을 위하여 보유 선박 또는 해양금융자산을 처분할 수 있다. ② 처분대금은 정관 및 투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자에게 분배하거나 다른 선박 또는 해양금융자산에 재투자할 수 있다. ③ 재투자의 범위·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프로젝트 종료 후 투자회사를 청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회수자금을 신규 프로젝트에 재투자할 수 있는 계속형 투자플랫폼 구현
제30조(업무의 위탁)① 선박투자회사는 선박운용회사에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제30조(업무의 위탁)**① 선박투자회사는 선박운용회사에 제2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운용회사는 **구분계정별 투자자산의 발굴·심사·운용, 프로젝트자회사의 관리, 구분계정별 자산·부채 및 투자성과의 관리, 투자자산의 처분·재투자**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선박운용회사를 개별 선박 관리주체에서 복수 해양금융 프로젝트의 전문 운용주체로 기능 확대
<신설>	**제38조제1항 후단**구분계정을 설정한 선박투자회사는 결산서류 및 자산운용보고서를 **각 구분계정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현행 결산서류는 회사 단위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Umbrella형 구조에 맞는 계정별 회계·공시체계 마련
<신설>	**제41조제1항**구분계정을 설정한 선박투자회사는 각 구분계정에 귀속되는 수입 및 손익을 기준으로 해당 구분계정의 주주에게 수입을 분배할 수 있다.	특정 프로젝트의 손익이 다른 프로젝트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계정별 투자성과에 따른 배당 허용

□ 세제혜택 제도

○ 국내 「선박투자회사법」 세제혜택

구 분	세제혜택		현행 여부
선박투자회사 법인세	배당금 소득공제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해당 배당금액을 법인 소득금액에서 공제	적용 중
개인투자자 배당소득	9% 저율과세	과거 액면가액 5천만원 이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9% 세율 적용	2015년 종료
개인투자자 배당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외	과거 액면가액 2억원 이하 보유주식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제외	2015년 종료
선박 취득·보유세	취득세·재산세 감면	국제선박·친환경선박 등 해당 선박의 요건에 따라 지방세 감면 가능	별도 요건 충족 필요
일부 지역 특례	등록면허세 등 감면	예를 들어 제주특별자치도는 선박투자회사 법인 설립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80% 감면 규정 운영	지역별 조례 확인 필요

○ 싱가포르 VCC 제도 세제혜택

- 싱가포르 VCC는 적격 펀드가 Section 13O·13U 요건을 충족할 경우 투자소득을 면세하고, 분배금에 대해 주주단계 추가 과세를 배제

구 분	세제혜택	
VCC 분배금 면세	주주단계 소득세 면제	싱가포르 세무상 거주 VCC가 지급하는 분배금은 투자자 단계에서 싱가포르 소득세 면제
13O 펀드소득 면세	적격 투자소득 법인세 면제	싱가포르에서 설립·거주하고 싱가포르 펀드매니저가 운용하는 적격 VCC가 Designated Investments에서 얻는 Specified Income에 대해 법인세 면제가능
13U 펀드소득 면세	적격 투자소득 법인세 면제	일정 규모 이상 적격 펀드가 Designated Investments에서 얻는 Specified Income에 대해 법인세 면제가능
GST Remission	펀드 운용비용 GST 회수	펀드운용·관리 등 적격 투자활동과 관련하여 부담한 GST를 고정 회수율 방식으로 회수가능
조세조약 활용	해외 원천세 절감 가능	싱가포르 세무상 거주 VCC는 Certificate of Residence(COR)를 발급받아 싱가포르의 조세조약상 배당·이자 등의 제한세율 활용 가능
일반 법인세 감면	Partial Tax Exemption 또는 SUTE	13O·13U 면세대상이 아닌 과세소득에 대해서도 요건 충족 시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부분면세 또는 창업기업 면세제도활용 가능
외국원천소득 면제	일정 해외소득 면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배당·해외지점소득·해외용역소득 등에 대해 일반적인 Foreign-Sourced Income Exemption적용 가능
Umbrella VCC 세무격리	Sub-fund별 손익·세액 구분	소득세상 Umbrella VCC는 하나의 법인이지만 각 Sub-fund의 소득·손실·외국납부세액 등을 별도로 산정하며 한 Sub-fund 손실을 다른 Sub-fund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격리

○ 싱가포르 VCC 세제모델 국내 선박투자회사법 적용 방안

- 싱가포르 VCC 세제모델을 국내 선박투자회사에 적용하려면 「선박투자회사법」에는 Umbrella·Sub-fund 구조를 도입하고, 실제 세제혜택은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별도 규정이 필요

VCC 제도	현행 선박투자회사	적용방안
13O·13U 적격 투자소득 면세	90% 이상 배당 시 배당금 소득공제	일정 요건을 갖춘 적격 해양투자 Sub-fund의 선박투자소득 법인세 면제 또는 추가 소득공제신설
Sub-fund별 손익 구분	회사 단위 과세 중심	선박별 Sub-fund의 수익·비용·결손금 독립계산및 다른 Sub-fund와 손익통산 제한
VCC 분배금 주주단계 과세부담 경감	과거 9% 저율·분리과세 있었으나 2015년 종료	개인투자자에 대해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재도입
적격펀드 GST 지원	직접 대응 제도 없음	펀드 운용·관리비용 관련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 가능성 검토
해외투자자 친화적 과세	일반 국내 원천징수 체계	적격 해외 연기금·기관투자자에 대한 배당 원천징수 특례검토
Umbrella 차원의 통합관리	선박별 회사 설립 필요	운용사·이사회·회계·공시 등을 Umbrella에서 통합하여 비용 절감

5. 종합 평가 및 향후 과제

□ 기대효과

○ 다수 해양자산 포트폴리오 운용을 통한 투자위험 분산

- 조선·항만·물류 등 서로 다른 해양자산을 하나의 Umbrella 구조 아래 Sub-fund별로 운용함으로써 특정 선박, 선종, 용선사 또는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위험집중 완화

- 투자자는 자신의 위험선호도에 따라 특정 Sub-fund를 선택할 수 있어 해양금융 상품 투자구조를 보다 세분화 가능

○ 해양금융 투자기구의 운용 효율성 및 확장성 제고

- 신규 선박이나 프로젝트마다 별도의 투자회사 또는 SPC를 반복 설립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하나의 VCC 내에 새로운 Sub-fund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투자사업을 확대

- 이에 따라 법인설립, 회계, 운용 등 공통 관리기능을 통합하고 투자기구의 설립·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시장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양금융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편입할 수 있는 플랫폼형 운용구조 구축

○ 민간·해외자본의 해양금융시장 참여 확대

- 투자기간, 수익률, 위험수준 및 투자대상에 따라 다양한 Sub-fund를 구성함으로써 연기금·보험사·자산운용사 등 국내 기관투자자뿐 아니라 해외 기관투자자의 투자수요에도 대응 가능

- 이를 통해 정책금융 중심의 기존 해양금융 구조를 보완하고 친환경 선박, 조선·기자재, 항만·물류 등 새로운 해양산업 금융수요에 민간자본을 유입시키는 기반 마련

□ 한계점

○ 본 보고서는 「선박투자회사법」 내 개정 가능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회사법·자본시장법·세법 등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및 세제특례에 대한 종합검토에는 한계

- VCC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상법」상 회사제도,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규제, 세법상 과세체계 및 특례 등 관련 법령 전반의 정비가 필요하나, 본 검토는 우선적으로 「선박투자회사법」 자체에서 개정 가능한 요소를 중심으로 검토

○ Umbrella-Sub-fund 구조, 자본의 가변성, Sub-fund별 자산·부채 격리 등은 기존 주식회사 및 집합투자기구 법리와 차이가 있어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

○ 다수의 해양자산과 Sub-fund를 하나의 투자플랫폼에서 운용할 경우 자산평가, 이해상충, 레버리지 및 손실전이 등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별도 보호장치 마련 필요

□ 향후과제

○ (관련 법령 종합검토)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을 기반으로 「상법」, 「자본시장법」, 세법 및 도산 관련 법령과의 연계·정합성 검토 필요

○ (Sub-fund 법적 지위 명확화) Sub-fund별 자산·부채의 독립성, 채권자 청구범위, 회계·공시 및 청산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세제특례 설계) 현행 선박투자회사 세제를 기반으로 Umbrella-Sub-fund 구조에 적합한 법인세·배당소득세·취득세 등 세제지원 방안 구체화 필요

○ (투자자 보호체계 마련) Sub-fund별 자산평가·공시·레버리지 관리 및 이해상충 방지기준 등을 마련하여 제도 유연성과 투자자 보호 간 균형 확보 필요